

의안번호	2207979
의 퇴 인	박용갑 의원
회 답 일	2025.3.20.
추계번호	25A076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 (시판품조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서비스의 시판품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사 건수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매년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개요 및 현황은 [첨부자료1] 참고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사업은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내역 사업으로, 사업 예산 현황은 [표1]과 같음

[표1] 2025년도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사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국가표준활성화	6,763	6,000	6,278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077	1,088	800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4,317	3,862	3,978
- 산업표준화 실태 조사	65	70	70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980	980	980
- 국가표준화 혁신생태계 조성	356	-	-
-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450

자료: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세부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인해 확대되는 조사대상 수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함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6}^{2030} [\text{확대 시판품조사 등의 대상 수}_t \times \text{검사비 단가}_t]$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사전에 파악하여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서영빈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영빈	02-6788-4653	ybin@assembly.go.kr

[첨부자료 1] KS 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사업

□ 사업개요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을 실시함

□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유통 등에서 채취한 KS 제품의 표준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인증취소, 표시·판매정지 등을 처분함
 - －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시판품조사 등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직접 주관·실시함

□ '25년 사업계획(980백만원)

- (조사계획) 66개 KS인증 품목, 68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함
 - － 중점관리 품목(레미콘, PVC/PE관, LED 조명), 일반관리 품목(배선용 꽃음접속기 등) 등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정기조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 발생품목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를 실시함
 - －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함
- (행정처분) 부적합 제품 생산 업체에 대해 사전 처분통지, 업체의견 접수·검토 및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함